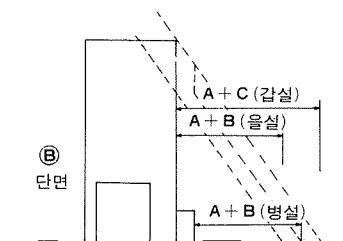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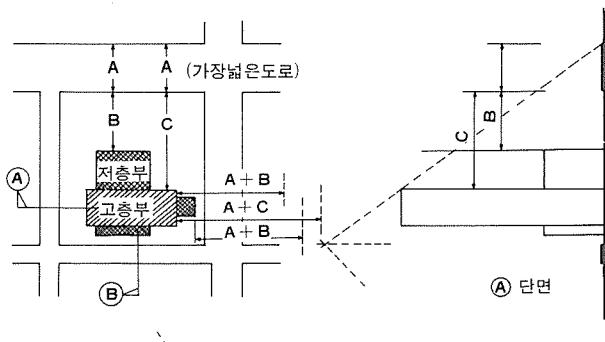


질의 · 회신

◎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의 적용방법은?

▣ 질의요지

단일건물이 다음과 같이 저층부와 고층부로 되어 있는 경우,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?



●甲說 :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. (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“ $A+C$ ”)

●乙說 :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. (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“ $A+B$ 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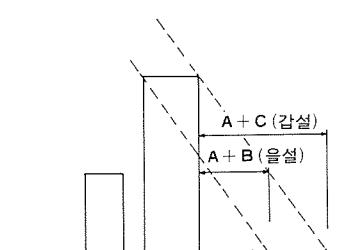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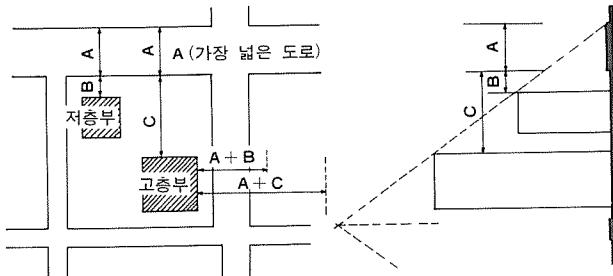
●丙說 : 단일건물이더라도 고층부의 이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甲說과 같고 저층부의 사선제한은 乙說과 같이 별도로 해석한다.

▣ 회신내용

고층부의 사선제한을 받는 이면도로의 폭은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넓은 도로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인 $A+B$ (귀 질의의 乙說)임.

▣ 질의요지

단일대지내에 다음과 같이 저층건물과 고층건물의 2동을 건축하는 경우,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건물의 도로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?



●甲說 :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. (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“ $A+C$ ”)

●乙說 :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. (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“ $A+B$ ”)

▣ 회신내용

단일대지내에 고층부와 저층부의 2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사선제한을 받는 명확한 법령조항은 없으나, 도로사선제한의 법 취지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저층부와 고층부가 겹치지 아니하고 저층부와 고층부 사이의 통로가 3이상일 경우 고층부의 사선제한은 $A+C$ (귀 질의의 甲說)가 되며, 그렇지 않을 때는 $A+B$ (귀 질의의 乙說)가 됨.